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63,974,446	25,919,233
일반회계	744,551,229	22,336,537
특별회계	119,423,217	3,582,697
공기업특별회계	54,788,511	1,643,65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4,788,511	1,643,655
기타특별회계	64,634,706	1,939,0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477,599	434,328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3,400,824	102,0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15,045	120,451
수질개선특별회계	67,000	2,01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60,780	112,8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053,739	31,612
주택사업특별회계	2,286,893	68,607
농공단지특별회계	5,671,598	170,148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302,546	39,07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48,869	115,466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4,594	7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856,226	175,687
도시개발특별회계	18,868,993	566,0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13,91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간주처리할 수 있다.